

신청기관 : 병무청

스위스의 대체복무제에 관한 주요 내용

김나루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 법학박사

I. 들어가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8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9조에 규정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핵심적인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8년 6월 28일,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에 관한 오랜 기간의 사회적 갈등이 마무리되며 대체복무제가 법제화되었다.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법상의 요건은 존재하지 않지만, 1998년에 유엔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결의안 1998/77」을 채택하여 대체복무제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¹⁾ 즉,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하며, 비처벌적인 성격의 범위 내에서 비전투원(non-combatant) 또는 민간인 자격(civilian character)

* 본고는 법무부의 입장이 아닌 필자의 개인적인 연구 결과임을 밝힙니다.

1 그 후 유엔 인권위원회는 「결의안 2002/45」를 채택함으로써 이전 「결의안1998/77」에서 수립한 최소한의 기준을 재확인한 바 있다(Quaker Council for European Affair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Europe: A Re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2005, p. 2).

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에 상응하는 다양한 대체복무의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속을 당하거나 반복적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

본고에서는 유럽 국가 중에서 현재까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의 대체복무제를 시행함으로써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스위스의 대체복무제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대체복무제의 도입 배경과 현황

스위스는 30년 전에 징병제의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징병제의 전통을 지켜온 몇 안 되는 유럽 국가 중 하나이다. 1989년, 2001년, 2013년에 징병제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인 2013년에도 앞선 투표와 마찬가지로 징병제 폐지는 부결되었다. 그리고 스위스는 서유럽 국가 중에 가장 늦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시행한 나라이기도 하다.³⁾ 1996년에 민간의 대체복무가 도입되기 전에는 수천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었다. 1968년부터 1996년 사이에 12,000명의 남성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을 살게 되었고, 이는 국제 앰네스티와 같은 기관의 정기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1974년과 1984년에 대체복무의 도입에 관한 계획이 무산된 바 있으나,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국민의 3분의 1이 군대 폐지를 지지하는 대중적 발안(發案)이 있는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다. 여기에 더하여, 스위스 내 평화 단체에 의한 수년간의 캠페인 시행의 결과,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기존의 국방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1992년에 이들은 민간의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였다.⁴⁾ 그 후 1996년에 '민간의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고, 이때부터 대체복무가 시행되었다.

2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77, p. 1.

3 Quaker Council for European Affair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Europe: A Re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2005, p. 69.

4 82.5%가 찬성하였고 17.5%가 반대하였다.
<https://www.bk.admin.ch/ch/f/pore/va/19920517/det379.html> (검색일: 2020년 3월 29일).

스위스는 이로써 민간의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민간의 대체복무를 훨씬 늦게 도입한 것이었다.⁵⁾ 무엇보다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모든 사람은 먼저 그들이 군복무를 일부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양심적 동기 및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위원회에 설득시켜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심에 관련된 조사는 2009년에 폐지되었다, 그리고 대체복무의 기간은 일반 군복무보다 1.5배가 더 길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대체복무를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2011년에 정부는 대체복무의 지원자 수를 낮추고, 사람들이 민간의 대체복무를 선택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또한 2018년 10월에 정부는 대체복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새로운 대책 패키지를 제시하였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서는 점점 더 많은 수의 남성이 민간의 대체복무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매년 군복무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중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⁷⁾ 그래서 전(前) 우파 다수당 정부는 국민들의 대체복무제 선택율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 논의된 내용 중에는 대체복무 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의 재도입, 거주지 선택권의 축소,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자가 상징적인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는 요건, 보수 삭감, 심지어 대체복무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있었다.⁸⁾

5 European Bureau for Conscientious Objecti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Europe 2019, Annual Report, 2020, p. 30.

6 https://www.swissinfo.ch/eng/conscientious-objection_is-it-possible-to-refuse-military-service-in-switzerland-/45306024 (검색일: 2020년 3월 13일).

7 민간의 대체복무를 하게 된 사람은 2011년 4,670명, 2012년 5,139명, 2013년 5,423명, 2014년 5,757명, 2015년 5,836명, 2016년 6,169명, 2017년 6,785명, 2018년 6,205명이다.
<https://www.news.admin.ch/news/message/attachments/55735.pdf> (검색일: 2020년 3월 16일).

8 European Bureau for Conscientious Objecti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Europe 2019, Annual Report, 2020, p. 19.

III. 대체복무제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

1. 대체복무를 위한 신청 및 심의 절차

스위스는 “모든 스위스 남자는 군복무를 할 의무가 있다. 민간의 대체복무는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라고 연방 헌법에 규정⁹⁾함으로써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민간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에 따르면, “군복무 행위가 자신의 양심에 반하기 때문에 군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더 오랜 기간 동안 민간의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⁰⁾

2009년 3월 31일까지, 대체복무를 위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동기 및 이유는 특별 위원회에 의한 인터뷰를 통해 조사되었고, 민간의 대체복무 신청서는 연방경제부(Federal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¹¹⁾에 제출되어야 했다. 신청서에는 이력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동기에 관한 서면, 대체복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서면이 포함되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은 연방경제부 장관에 의해 선택되고 지명된 민간인이었다. 신청이 거부되면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2009년 4월 1일 이전에 신청했지만, 2009년 3월 31일까지 승인받지 못한 자는 인터뷰 없이 승인되었다.¹²⁾ 위원회의 결정은 엄격한 측면이 있었는데, 2001년의 마리노 케케이스(Marino Keckeis)의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시이다. 당시 그의 대체복무 신청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그가 위원회에 본인의 양심상의 신념을 설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군복무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이행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지만, 결국 군법원에서 5개월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징역기간 동안 단식 투쟁을 하였고, 3개월 후에 조기 석방되었다. 그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이목을 끌었는데, 국제 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구두 설명의 제약으로 인해 그의 대체복무 신청이 거절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¹³⁾

9 Federal Constitution of the Swiss Confederation Art. 59.

10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Art. 1.

11 자료에 따라서는 Ministry of Economic Affairs라고 하기도 한다.

12 https://www.wri-irg.org/sites/default/files/public_files/Rrtk-update-2009-Switzerland.pdf (검색일: 2020년 3월 10일), Quaker Council for European Affair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Europ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EUROPE: A Re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2005, p. 68.

13 <https://wri-irg.org/es/story/2009/suiza-ha-abolido-el-examen-de-conciencia?language=en> (검색일: 2020년 3월 17일).

그러나 2009년 4월부터는 대체복무 지원 신청은 오직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원회의 조사가 없어 졌다. 대체복무의 지원 신청 시점에 그들이 군복무를 해야 하는 기간보다 반 이상의 기간을 더 복무함을 알고 내린 결정 자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동기에 대한 충분한 사실 입증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대체복무 신청자는 연방경제부에 서면 양식을 요청하여 군복무와 양심간의 갈등을 진술해야 하지만, 그 갈등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 해당 서면은 추가적인 조사 없이 수락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에 대한 조사를 제한한 이후에 대체복무 신청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대체복무의 기간 증대 또는 대체복무의 신청을 어렵게 하는 대안과 관련하여 행정부와 국회 간에 격렬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¹⁴⁾

UN 인권이사회는 결의안 24/17에서 스위스와 같이 추가적인 조사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진술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좋은 관행이며, 환영할 만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¹⁵⁾ 이러한 관행을 갖춘 국가의 시스템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군복무의 거부를 진술하는 간단한 형식의 서면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받은 관련 당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군복무를 면제해 주게 된다. UN 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시스템이 사상, 양심,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최대한 인정하고 이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본질적으로 타인이 판단하기가 곤란한 내적, 개인적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¹⁶⁾

스위스에서 민간의 대체복무를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¹⁷⁾ 민간의 대체복무 지원 신청은 현재 민간의 생활을 하고 있든지, 군복무 중이든지 언제나 가능하다. 그러나 대체복무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몇 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영통지를 받은 날부터는 지원 신청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절차는 단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체복무 지원자는 민간의 대체복무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계정을 만든다. 그 후 지원자가 신분증명서의 인터넷 사본을 제공하면, 우편으로 개인 코드를 받는다. 앞서 언급한 계정의 개설

14) Christophe Barbey, Application Procedures for Obtaining the Status of Conscientious Objector, infoDroit.ch, 2018, p. 2; Quaker United Nations Office, Closing the Implementing Gap: Application Procedures Enabl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9, p. 3.

15) 스위스 이외에 이러한 관행을 따르는 국가는 노르웨이, 오스트리아이다. 노르웨이는 2001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에 대한 신청은 법무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면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더 이상의 조사 또는 인터뷰는 요구되지 않는다. 대체복무가 중단된 2011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면제의 대상이 된다. 오스트리아에서 대체복무의 신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민간의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군복무거부에 대한 표현에 동의한다고 진술하는 표준 양식으로 이루어진다. 1991년부터 인터뷰는 실시되지 않으며, (지원서가 거부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지만) 추가 조사 없이 신청서를 유효하게 접수한다(Quaker United Nations Office, Closing the Implementing Gap: Application Procedures Enabl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9, p. 3).

16) Quaker United Nations Office, Closing the Implementing Gap: Application Procedures Enabl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9, pp. 2~3.

17) Christophe Barbey, Application Procedures for Obtaining the Status of Conscientious Objector, infoDroit.ch, 2018, p. 2.

은 보통 1일~3일 정도 소요된다. 웹사이트 상에서 지원자는 참석 가능한 오리엔테이션 날을 선택해야 하며, 가능한 장소를 선택하는 데에 평균 5일~10일, 바쁜 기간에는 3주~5주까지 걸린다. 지원자의 오리엔테이션의 참석은 의무적이며, 3개월 이내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절차는 취소된다. 그러나 군복무를 해야 할 기간이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지원자의 양심적 병역거부 동기의 존재, 관련 법률에 따른 민간의 대체복무에의 의지가 표명된 서면이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승인 결정이 된다. 이 승인 결정은 서면 확인이 이루어진 후, 10일 내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원자가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또는 입영통지를 받은 긴급한 경우에 24시간 내로 승인결정이 이루어진다. 즉 승인 결정의 시점에 군복무 중이라면, 군은 그 사람을 승인 결정이 내려진 후, 24시간 내에 제대시켜야 하는 것이다. 대체복무가 한 번 승인이 되면 그 승인은 취소될 수 없으며, 대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내야 하는 면제세(exemption tax)를 제외한 군에 관한 모든 의무는 종료된다.

2. 절차상의 문제점

2016년 7월 1일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민간의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아직 승인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 즉 법적으로 여전히 군복무 의무가 있는 상황임에도 복무를 하려 오지 않는 경우, 군복무에 대한 면제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균형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의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복무를 하려 오지 않는 경우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지원자가 민간의 대체복무 신청을 늦게 하여서 본인이 입대를 해야 하는 시기 전에 대체복무의 승인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매년 12건 내외로 발생한다. 결국 개정된 균형법은 민간의 대체복무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일부를 처벌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심상의 동기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됨으로써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지원자는 군에 본인이 군입대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동기를 메일 또는 전화로 진술할 필요가 있으며, 앞서 언급한 개정된 균형법의 내용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⁸⁾

18 Christophe Barbey, Application Procedures for Obtaining the Status of Conscientious Objector, infoDroit.ch, 2018, p. 3.

3. 민간의 대체복무 기간 및 보수 관련

민간의 대체복무 기간은 390일이고 일반 군복무의 기간은 260일로서, 1.5배 차이가 난다.¹⁹⁾²⁰⁾ 그리고 만일 대체복무 지원자가 군대에서 부사관 또는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경우, 대체복무의 기간은 남은 군복무 기간의 1.1배가 된다.²¹⁾ 1987년에 유럽평의회(의사결정기구인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No. R(87)8」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서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기간은 일반 군복무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²²⁾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의 기간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결정을 내린 경우가 있다. Foin v. France 사건²³⁾에서 “법률 및 관행은 군복무와 대체복무 간의 차이를 둘 수 있으며, 그러한 차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관련된 구체적인 대체복무의 성격 또는 대체복무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한 훈련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오랜 기간의 대체복무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프랑스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보다 두 배 긴 대체복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²⁴⁾에 위반된다.”라고 보았다.²⁵⁾

19 스위스와 같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의 군복무기간과 민간의 대체복무기간을 비교해보면, 그 기간이 동일한 국가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웨덴, 몰도바이고, 그 기간이 동일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핀란드, 1.4배 차이가 나는 국가는 시프러스, 1.5배 차이가 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1.7배 차이가 나는 국가는 그리스, 2배 차이가 나는 국가는 조지아가 있다(European Bureau for Conscientious Objecti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Europe 2019, Annual Report, 2020, p. 31).

20 Loi fédérale sur le service civil Art. 8.

21 Loi fédérale sur le service civil Art. 8.

22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No. R(87)8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regard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1987, p. 2

23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당사자는 1966년 9월 출생한 프랑스인 Frédéric Foin이다. 그는 1988년 12월에 카마르크(Camargue)의 자연보호구역에서 대체복무 의무를 이행하도록 발령받았다. 1989년 12월 23일, 즉 대체복무 이행 후 1년이 되던 때에 그는 그의 자리를 이탈하였다. 「병역법」(National Service Code)에 따르면, 일반 군복무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는 2년의 기간 동안 민간의 대체복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당사자에 따르면, 군복무 기간의 2배가 되는 대체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상 및 의견을 근거로 금지된 차별에 해당하며, 일반 군복무의 기간이 넘는 대체복무 이행에 거부를 이유로 한 구금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9조,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Foin v. France, Communication No. 666/1995).

24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6: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평등한 보호 하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법은 어떠한 차별도 금지해야 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지역, 정치적 또는 기타 사상 및 의견,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혈통 또는 기타 지위 등과 같은 원인으로 한 차별에 대항하여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25 Human Rights Committee, 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Sixty-seventh session – Communication No. 666/1995, 1999, p. 7.

민간의 대체복무 기간이 과도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대체복무에 대한 낮은 보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접근권을 방해하거나 승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민간의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자는 본인이 받았던 급여의 80%를 보수로 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전에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들이 대체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일을 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스위스의 최저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된 최소한의 할당량만 받게 된다. 그 결과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도 사회복지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군의 병사들은 군대의 사회복지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반면, 민간의 대체복무자를 위해서는 마땅한 지원 기관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²⁶⁾

4. 대체복무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다음의 영역에서 민간의 대체복무를 수행한다. 보건, 사회복지, 공교육, 문화재 보존, 환경 보호, 산림 경관 보존, 농업, 개발 협력 및 인도주의적 지원, 재해 및 비상사태의 예방 및 억제, 재해 및 비상사태 후의 복구 등이 그 담당 영역이다.²⁷⁾ 이처럼 민간의 대체복무자는 사회복지, 보건 분야, 환경 보전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는 기능의 공적 또는 사적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이행하게 된다. 대체복무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전시 또는 긴급 상황의 경우에만 소집이 되어 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군대 내의 비전투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²⁸⁾

5. 대체복무 관련 담당 부처

대체복무 신청은 연방경제부에 접수된다. UN 인권이사회는 대체복무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이 징병제 유지에 특권을 가진 정부 또는 군대 내의 조직원을 포함하고 있는 정부의 기관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정하지

26 Christophe Barbey, Application Procedures for Obtaining the Status of Conscientious Objector, infoDroit.ch, 2018, p. 5.

27 Loi fédérale sur le service civil Art. 4.

28 Quaker Council for European Affair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Europe: A Re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2005, p. 69.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UN 인권이사회는 대체복무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 경우에 있어서 군사법 당국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민간 당국의 통제 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 평가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²⁹⁾

6. 세금 관련

군복무 또는 민간의 대체복무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모든 남성은 병역면제세(Military Service Exemption Tax)를 지불해야 한다. 이 세금은 스위스 연방에 의해 부과되지만, 주(Canton)에 의해 평가되고 수집된다. 병역면제세는 군복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워 군부대에 배치되지 않은 자의 경우, 19세가 되는 해부터 37세까지 내야 한다. 병역면제세는 매년 과세소득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최소 400프랑이다. 만약 추후에 군복무 또는 민간의 대체복무를 완료하게 되면, 이에 대한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권리는 군복무 또는 민간의 대체복무 이행이 중단된 후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환불에 대한 신청은 병역면제세를 담당하는 주 사무소(Cantonal Office)에서 받고 있으며, 환불되는 세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³⁰⁾

군복무나 민간의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병역면제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복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군복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했던 기준이 민간의 대체복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군복무를 위한 신체적, 보안적 요건은 민간의 대체복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나,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³¹⁾ 이후 가벼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대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는 대신 민간의 대체복무를 이행하려는 사람들 중에 가벼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민간의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³²⁾

29 Quaker United Nations Office, Closing the Implementing Gap: Application Procedures Enabl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9, p. 9

30 <https://www.ch.ch/en/military-service-exemption-tax/>(검색일: 2020년 3월 28일).

31 2009년 4월30일의 *Glor v. Switzerland* 케이스이며, 원고는 가벼운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대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복무라도 할 의지가 있고, 복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세를 내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에 대해서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스위스 당국의 그러한 관행은 「유럽인권협약」 제14조의 차별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32 Christophe Barbey, Application Procedures for Obtaining the Status of Conscientious Objector, *infoDroit.ch*, 2018, p. 9.

IV. 관련 주요 사례

앞에서 언급한 마리노 케케이스(Marino Keckeis)의 사례를 보자. 24세의 산림노동자인 그는 군복무 이행을 거부한 결과, 2002년 1월 15일부터 그로스호프(Grosshof) 구치소에서 5개월 징역을 살게 되었다. 국제 엠네스티는 그의 군복무 이행의 거부는 양심적, 윤리적, 종교적 신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를 즉시 석방되어야 하는 양심수라고 보았다. 마리노 케케이스는 군복무 이행 거부에 대한 징역 선고와 스위스의 민간의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에 항의하면서, 2002년 2월 20일에 단식투쟁을 시작하였고, 6주 이상 지속하였다. 마리노 케케이스는 민간의 대체복무를 신청하였지만, 그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군복무 이행과 양립할 수 없는 양심상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회에 납득시켜야 하는데, 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그에 대한 징역 선고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구두 설명의 제약 때문이라고 보고, 스위스 당국에 민간의 대체복무 신청을 평가할 때에 국제적 기준을 충분히 따를 것을 촉구하였다.³³⁾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7년 2월에 마리노 케케이스는 연방경제부(Federal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산하의 중앙의 민간 대체복무 당국(Central Civilian Service Authority)에 민간의 대체복무를 신청하였다. 그는 신청서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그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의무와 헌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본인이 군복무를 하게 된다면, 환경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본인의 생명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하였다. 1997년 3월 18일, 관련 당국은 그의 신청서 접수를 확인하였고,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에게 일시적인 군복무 면제를 허가하였다. 1997년 6월 6일, 대체복무 당국은 마리노 케케이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을 요청하였고, 그는 본인이 자라온 환경과 교육받은 방식,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18세 때, 1년을 수도원에서 보냄) 때문에 폭력의 사용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그는 모든 군대 내에서의 훈련은 불가피하게 파괴적이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7년 8월과 10월, 마리노 케케이스의 민간의 대체복무 신청은 그의 양심과 도덕적 동기에 대한 대면조사 후에 거부되었다. 그는 대면조사에서 본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대체복무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였는데, 그의 종교적, 윤리적 신념이 군복무와 양심의 갈등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1999년 2월 2일, 그는 평화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으며, 자신이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인물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음을 언급하면서 민간의 대체복무를 재신청하였으

33 <https://www.amnesty.org/download/Documents/116000/eur430022002en.pdf> (검색일: 2020년 3월 21일).

나, 마찬가지로 거부되었다. 그 후 마리노 케케이스는 군입대를 하지 않았는데, 베른의 군법원은 1999년 10월 27일에 그에 대하여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군검찰은 더 높은 징역의 선고를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2000년 6월 2일에 군항소 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군검찰에 의해 형량에 대한 추가 항소가 있는 후, 그 사건은 다시 재개되었고, 군항소 법원은 형량을 5개월로 늘렸다. 다시 군검찰은 8개월의 징역형으로 더 높은 형량을 요구하며 항소했지만, 2001년 12월 18일의 군항소 법원의 최종 판결로 5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형량은 반구금 형식으로 복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평일에는 교도소 밖에서 승인된 업무를 수행하되 야간과 주말에는 교도소로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식투쟁을 시작한 뒤, 마리노 케케이스는 교도소 안에 남아 있게 되었다.³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9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의 개념에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1987년에 유럽평의회는 각료위원회가 채택한 「권고 No. R(87)8」에서 다음의 기본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군복무를 위한 징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은 양심에 관한 이유로 무장의 군복무를 거절하며, 그러한 군복무 의무로부터 해방될 권리를 가져야 한다.”³⁵⁾

국제 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양심 또는 심오한 신념 상의 이유로 군대 내의 복무를 거절하거나 전쟁 또는 무력 충돌에 직·간접적인 참여를 거절하는 자로 본다. 국제 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동기 및 이유에 동의하지도, 동의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국제적 기준에 따라 그들의 양심 또는 심오한 신념에 근거하여 인간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이행을 위한 근거 법률과 절차의 확립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 윤리, 도덕, 인도주의, 철학, 정치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국제 앰네스티는 앞서 언급한 모든 양심상의 근거나 심오한 신념에 대한 평가 절차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한, 그러한 절차 시스템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³⁶⁾

34 <https://www.amnesty.org/download/Documents/116000/eur430022002en.pdf> (검색일: 2020년 3월 21일).

35 <https://www.amnesty.org/download/Documents/116000/eur430022002en.pdf> (검색일: 2020년 3월 21일).

36 <https://www.amnesty.org/download/Documents/116000/eur430022002en.pdf> (검색일: 2020년 3월 21일).

V. 맺으며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지만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강대국과 인접해 있는 지정학적인 요소로 인해 역사적으로 항상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스위스가 중립국임에도 불구하고 징병제를 오늘날까지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군대 유지에 대한 국가 재정의 문제, 국방 시스템 문제, 인구 감소 문제, 인권 의식 신장 등으로 인하여 의무 군복무 제도인 징병제가 변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이다. 위에 언급한 다양한 이유로 평화주의자들과 좌파 정당을 중심으로 징병제 폐지를 1989년, 2001년, 2013년에 걸쳐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되었고, 이와 함께 1974년부터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96년 '민간의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본격적으로 대체복무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대체복무의 조건이 매우 엄격했으나, 점차로 완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수록 대체복무 신청자가 늘어가고 실제 군인의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스위스 정부의 대체복무제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위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민간의 대체복무를 시행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민간의 대체복무 지원 신청은 이를 관할하는 연방경제부에 서면으로 하고, 별도 위원회의 인터뷰를 통한 대면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즉 대체복무 신청자는 서면을 통하여 군복무와 양심간의 갈등을 진술하되, 그 갈등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 해당 진술 서면은 추가적인 조사 없이 수락된다. 물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에 대한 조사를 금지한 이후에 민간의 대체복무 신청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는 민간의 대체복무 신청을 어렵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민간의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아직 승인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경우, 과거에는 군복무에 대한 면제 이익을 누릴 수 있었으나, 군형법의 개정으로 그러한 면제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었고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간의 대체복무 기간은 390일이고, 일반 군복무의 기간은 260일로서 1.5배 차이가 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사회복지, 보건 분야, 환경 보전, 인도주의적 지원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는 다양한 공적 또는 사적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이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의 대체복무를 하는 자는 본인이 받았던 급여의 80%를 보수로 받으나, 그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이전에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대체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일을 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스위스의 최저 생활 수준으로 책정된 최소한의 할당량만 받게 된다. 이처럼 스위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의 대체복무제를 시행함으로써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동시에, 국가의 안보를 위해 그 수가 급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Alexander Mistic, Nicole Töppervien, Constitutional Law in Switzerland, Wolters Kluwer, 2018.
- Christophe Barbey, Application Procedures for Obtaining the Status of Conscientious Objector, infoDroit.ch, 2018.
-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No. R(87)8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regard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1987.
- European Bureau for Conscientious Objecti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Europe 2019, Annual Report, 2020.
- Human Rights Committee, 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Sixty-seventh session – Communication No 666/1995, 1999.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77.
- Quaker Council for European Affair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Europe: A Re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2005.
- Quaker United Nations Office, Closing the Implementing Gap: Application Procedures Enabl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9.
- <https://www.bk.admin.ch/ch/f/pore/va/19920517/det379.html> (검색일: 2020년 3월 29일).
- https://www.swissinfo.ch/eng/conscientious-objection_is-it-possible-to-refuse-military-service-in-switzerland-/45306024 (검색일: 2020년 3월 13일).
- <https://www.newsd.admin.ch/newsd/message/attachments/55735.pdf> (검색일: 2020년 3월 16일).
- https://www.wri-irg.org/sites/default/files/public_files/Rrtk-update-2009-Switzerland.pdf (검색일: 2020년 3월 10일).
- <https://wri-irg.org/es/story/2009/suiza-ha-abolido-el-examen-de-conciencia?language=en> (검색일: 2020년 3월 17일).
- <https://www.amnesty.org/download/Documents/116000/eur430022002en.pdf> (검색일: 2020년 3월 21일).